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 정책 및
원산지 대응

Vol. 03
May 2025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활용연구

- FTA 활용률 통계 산출
- FTA 관세율 정보 제공
-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연구

- FTA 협상 지원
- FTA 정책 지원정보
- 원산지 규정 분석 및 해석

신통상규제 연구

- 수출입 규제 수집 분석
-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 국제통상 정책 동향 수집 분석

FTA·원산지 연구

관세청 FTA
이행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원산지검증 지원

- 국내·외 품목·산업 동향 수집 분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 인증수출자 인증 예비조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FTA 전문인력 양성

- FTA 활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 전문자격제도 운영 및 도서발간

발행인 김일권

발행처 한국원산지정보원

발행일 2025년 5월 28일

주 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전화 031-600-0769

홈페이지 www.origin.or.kr

ISSN 3022-7984

Copyright ©2024 by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원산지정보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관세청,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 게재

- ☑ 관세청은 기업들의 수출입 신고 시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15건의 품목분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5/26(월) 관보에 게재하였음

- ① 반도체 패키지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 (심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중 품목분류 검토
 - (결정)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 ② 골프 거리 측정기
 - (심의) 골프용품(제9506호) / 거리측정기(제9015호) 중 품목분류 검토
 - (결정) 골프뿐 아니라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프채 등이 분류되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

- ☑ 관세품목분류 15건 품목분류 결정 내용

연번	대상물품	품목분류 결정
1	프로모락 치킨스톡 큐브	2103.90-9090
2	SPUTTER MACHINE(전자파차폐막 증착기)	8486.40-2099
3	골프 거리측정기	9015.10-0000
4	휴대용 엑스선 촬영기기	9022.14-1090
5	Soft X-ray lonizer	9022.14-1090
6	GOOSE NECK GUIDE	8708.29-0000
7	GARNISH ASSY-A PILLAR	8708.29-0000
8	VALVE ASSY	8481.30-0000
9	MOTORCYCLE LEG COVER	6307.90-9000
10	CONE BEARING	8482.20-0000
11	믹싱보울 세트	7323.93-0000
12	BOSWELLIA EXTRACT	1302.19-9099
13	방열용 충전재	3824.99-9090
14	EPDM PAD	4008.11-9000
15	Silicone Gasket Sponge	3916.90-9000

치킨스톡 튜브(제2103호) 등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으며, 세부 내용은 관보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 정책 및 원산지 대응

- 트럼프 2기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신통상 연구 확대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및 신통상 규제 이슈 분석 자료 발간
- CBP 유사 사례를 통해 자사 제품의 원산지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거나 사전심사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글_박현혁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출범한 제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재차 전면에 내세우며, 통상 정책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와의 무역적자 해소, 자국 산업 보호, 국가 안보 등을 명분으로 관세 조치 강화 및 무역 협상 재정비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우리 원)은 2025년 신통상 규제팀을 신설하고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 분석, CBP¹⁾ 사전심사 가이드 작성, 신통상 관련 이슈 제공 등 다각적인 연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추진된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우리 원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5년 상반기 KIOI 미국 통상 정책 및 비특혜원산지 대응 주요 성과

구분	주요성과
1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사례집 발간
2	미국 CBP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북 및 동영상 제작·배포
3	美 관세부와 현황 정보 제공 및 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2.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사례집 발간



2-1.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Origin Case」 발간

미국은 비특혜원산지 판단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정부조달협정(GPA)²⁾ 등 다양한 통상 규제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원산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FTA 등에서 적용되는 특혜원산지 기준과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정책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단되는 ‘이중 원산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특히 실질적 변형 기준은 가공의 복잡성이나 제품의 본질적 성격의 변화 여부 등 정성적 판단 요소에 기반하기 때문에, 미국 CBP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통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와 해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원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법적 기준과 실무 사례를 정리한 「ORIGIN CASE」 Vol.1을 2025년 5월 발간하였다. 본 간행물은 미국 CBP가 발표한 주요 사전심사 판정 사례들을 분석한 것으로, 우리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원산지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Vol.1은 SE 케이블, 냉동 어류, 전동 모터 등 6가지 품목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각 사례는 품목 개요, 제조공정, 핵심 쟁점, 법적 근거, 판정 결과 등을 기준으로 항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비특혜원산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사 사례를 통해 자사 제품의 원산지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거나 사전심사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원은 「ORIGIN CASE」 Vol.1을 시작으로 향후 대미 수출 주요 품목들에 대한 사전판정 사례를 분석하여 매월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Origin Case」 Vol.1



「Origin Case」 사례 예시

ORIGIN CASE
1
SE 케이블 (제8544.49호)

요약

사건명 한국 FTA 제정 후 제30호 부여된 SE 케이블 수입 관세 환원

사건번호 HQ H329004 (2024.03.28)

사건요지 원산지 판정 불합격 불복신청에 대한 미국 CBP의 제30호 부여 결정 후 관세 환원

판정 일자 2024.03.28

판정 기관 미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판정 대상 SE 케이블 (제8544.49호)

판정 결과 관세 환원 결정

판정 이유 SE 케이블 (제8544.49호) 수입 관세 환원 결정

판정 근거 미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판정 결과

판정 개요

판정 대상 SE 케이블 (제8544.49호)

사건 개요

SE 케이블 (제8544.49호) 수입 관세 환원 결정

판정 결과

관세 환원 결정

판정 이유

SE 케이블 (제8544.49호) 수입 관세 환원 결정

판정 근거

미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판정 결과

판정 사례

사건명 한국 FTA 제정 후 제30호 부여된 SE 케이블 수입 관세 환원

사건번호 HQ H329004 (2024.03.28)

사건요지 원산지 판정 불합격 불복신청에 대한 미국 CBP의 제30호 부여 결정 후 관세 환원

판정 일자 2024.03.28

판정 기관 미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판정 대상 SE 케이블 (제8544.49호)

판정 결과 관세 환원 결정

판정 이유 SE 케이블 (제8544.49호) 수입 관세 환원 결정

판정 근거 미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판정 결과

판정 사례

사건명 한국 FTA 제정 후 제30호 부여된 SE 케이블 수입 관세 환원

사건번호 HQ H329004 (2024.03.28)

사건요지 원산지 판정 불합격 불복신청에 대한 미국 CBP의 제30호 부여 결정 후 관세 환원

판정 일자 2024.03.28

판정 기관 미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판정 대상 SE 케이블 (제8544.49호)

판정 결과 관세 환원 결정

판정 이유 SE 케이블 (제8544.49호) 수입 관세 환원 결정

판정 근거 미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판정 결과

2-2.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산업별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집 발간

「ORIGIN CASE」와 더불어 우리 원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 및 「제2편 - 자동차 부품」을 공동 발간하였다.

본 사례집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관련 미국 관세정책과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CBP가 비특혜원산지 판단 시 고려하는 기준과 절차를 판정 사례 및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철강제품)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자동차 부품)

3. 미국 CBP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북 및 동영상 제작·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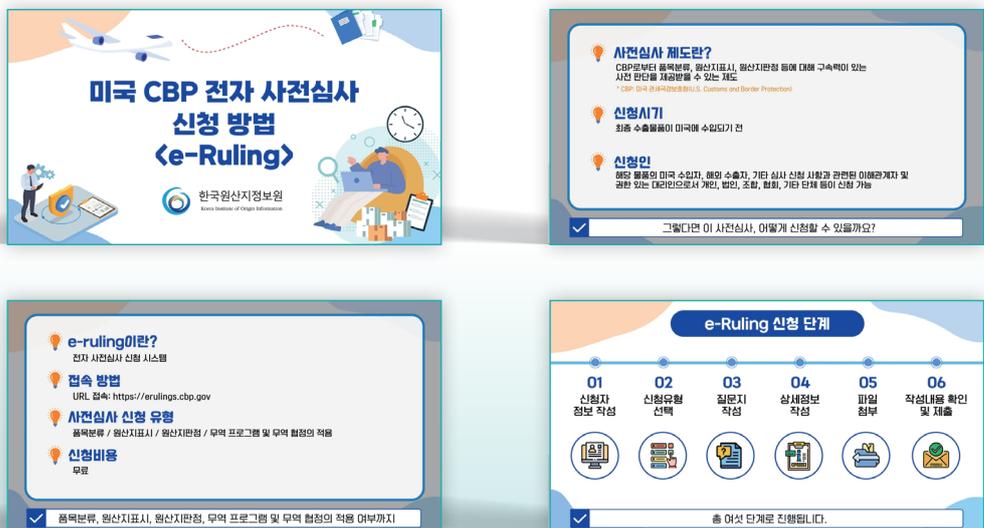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원산지 판단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CBP의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국문 활용 사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무자들의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우리 원은 CBP 사전심사 신청 절차, 서류 작성 방법,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신청 절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연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CBP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 및 시연 동영상은 우리 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CBP e-Ruling 신청 동영상



4. 美 관세부과 현황 정보 제공 및 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³⁾,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을 근거로 한 미국의 관세정책은 변화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국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원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미국 관세 부과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5년 4월 30일 우리 원은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美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미 수출기업 설명회」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개최하였다. 본 설명회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급변하는 미국의 관세·무역 정책과 원산지 규제 변화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최근 관세 부과 동향, 관세청 대응 방안, 미국 수출 시 통관 유의 사항, 미측의 비특혜원산지 기준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우리 원은 향후에도 관세청, 지역 세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설명회 개최, 실무자 교육, 사례자료 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美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미 수출기업 설명회

2025년 신규 관세 요건

IEEPA 및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행정명령 및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미국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가 부과됨. 최신 관세율 및 영향률 받는 국가와 품목에 대한 정보는 [CBP.gov](https://www.cbp.gov)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중국/홍콩

관세율 : 20%

적용 날짜 : 2월 4일, 3월 4일

IEEPA에 따라 모든 상품에 10% 관세가 추가됨. 부과일: 3월 4일. 2025년 4월 1일부터 관세 추가됨. 예외 사항: 예외 품목, 25% 관세(Da Heimen)가 적용됨.

멕시코

관세율 : 25%, 10% 감면

적용 날짜 : 3월 4일, 3월 7일

IEEPA에 따라 모든 상품에 25% 관세가 추가됨. 2월 28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함. USMCA 원산지 상품은 면제됨. 예외 사항: 관세 면제 대상 아님.

칠리

관세율 : 25%

적용 날짜 : 3월 12일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의 칠리(파생상품 포함)에 25% 관세가 추가됨. 예외 사항: 관세 면제 대상 아님.

상호 관세

관세율 : 10%

적용 날짜 : 4월 9일, 4월 9일, 4월 10일, 5월 14일

IEEPA에 따라,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 10%의 관세가 부과됨. 국별 세율은 7일(영국), 14일(미국), 232조가 적용되는 제품은 14일(영국), 232조가 적용되는 제품은 14일(미국)이다. 2025년 4월 9일부터 관세 부과되며, 5월 14일부터 12월까지는 추가 10%의 관세가 적용됨. 단, 예외 사항이 존재함.

특정 관세 분리 적용 적용 날짜 : 5월 16일

기존 세율(예: 232조가 적용되는 제품은 멕시코 IEEPA, 캐나다 IEEPA, 일부 EU/중립 232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멕시코 IEEPA 또는 캐나다 IEEPA가 적용되는 제품은 일부 EU/중립 232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일부 EU/중립 232조가 적용되는 제품은 일부 232조에도 계속 적용되며, 그 반대로 마찬가지임.

- 예외 품목이 적용됨.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율 : 25%

적용 날짜 : 4월 3일, 5월 3일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의 자동차 및 부품(4월 3일 발효)과 자동차 부품(5월 3일 발효)에 25%가 추가됨. 예외 사항: 관세 면제 대상 아님.

캐나다

관세율 : 25%, 10% 감면

적용 날짜 : 3월 4일, 3월 7일

IEEPA에 따라 모든 상품에 25% 관세가 추가됨. 2월 28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함. USMCA 원산지 상품은 면제됨. 예외 사항: 관세 면제 대상 아님.

일부 미산

관세율 : 25%

적용 날짜 : 3월 12일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의 일부 미산(파생상품 포함)에 25% 관세가 추가됨. 단, 캐나다산 알루미늄(아연)에는 200%의 높은 관세 적용됨. 예외 사항: 관세 면제 대상 아님.

美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미 수출기업 설명회

최근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5. 4. 30(수) 13:00~16:00
- 장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대상 : 대미 수출 중소기업
- 행사 내용
 - 美 관세부과 동향 및 대응방안 소개 및 1:1 관세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에 맞춤형 정보 제공

행사 세부 일정(안)

시간	내용	발표자
(Session 1) 미 관세부과 최신 동향		
13:00~13:30	미 관세 부과 동향 및 관세청 대응 방안	관세청
13:30~14:00	미국 통관 동향 및 수출기업 유의사항	미국 관세사
(Session 2) 미 관세부과 대응 방안		
14:10~14:40	비특혜원산지 기준 및 판정 사례	한국원산지정보원
14:40~15:00	미 관세부과와 품목분류의 중요성	관세평가분류원
(Session 3) 현장상담		
15:00~16:00	1:1 관세 상담	한국무역협회

● 주최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 문의 : 한국무역협회 FTA기업지원실(02-6000-7583)

3)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5. 향후 계획



2025년 상반기 우리 원은 급변하는 미국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높이고,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Origin Case」와 「철강제품 및 자동차 부품 사례집」 발간, 「CBP 사전심사 가이드북 및 동영상」 제작, 「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미측의 비특혜원산지판정 기준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하반기에도 우리 원은 산업별·지역별로 특화된 비특혜원산지 대응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통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ORIGIN CASE」의 지속 발간, 신통상 규제 관련 수출기업 실태조사 자료 제공, 미 관세 부과 동향 및 원산지 관련 이슈 자료 제작 등의 연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보원이 제공하는 전문 정보들이 우리 중소기업의 원산지 리스크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 **ORIGIN CASE Vol.1**, https://www.origin.or.kr/lay1/bbs/S1T106C107/F/41/view.do?article_seq=1496&cpage=1&rows=10&condition=&keyword=&how=&cat
- ☑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https://www.origin.or.kr/lay1/bbs/S1T106C108/A/40/view.do?article_seq=1493&cpage=&rows=&condition=&keyword=
- ☑ **CBP e-Ruling 신청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5bJT42VcQA>
-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철강제품**, https://www.origin.or.kr/lay1/bbs/S1T106C108/A/40/view.do?article_seq=1490&cpage=&rows=&condition=&keyword=
-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자동차 부품**, https://www.origin.or.kr/lay1/bbs/S1T106C108/A/40/view.do?article_seq=1499&cpage=&rows=&condition=&keyword=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